해링턴 플레이스 만촌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2019.08.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10.24(목)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로 향후 주택시장 변동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자 본인이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라며,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64호(2017.9.20)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2018.10.24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는 신청하신 분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양가족 판단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손자녀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단,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또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청약의 방법이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오니 청약 신청 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의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자(군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인,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1층이 없는 경우 최하층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조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조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서류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최하층 우선배정이 청약통장 순위보다 우선하며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로)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자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다만,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 청약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투기과열지구내에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모두 재당첨 제한 위반에 따른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①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후 구분없이 주택형별 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은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 2017.10.18 이후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의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향후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적용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의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 순위 자격 및 가점제 적용 대상을 제한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이고, 세대주이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전지역 해당)에 당첨된 세대 및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은 청약신청 납입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신청하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에 따라 각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일반공급 6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rrington-mh3.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폐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일반공급 6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추첨하며 가점이 같은 경우 추첨에 따라 순번을 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정 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 시에는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의거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7.01.20. 시행)에 따라 최초 분양계약에 대하여 그 실제 거래가격(공동주택 공급가액, 발코니 확장 금액 등 옵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급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대상입니다.(외국인 계약 포함)
■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체결로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한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주택의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일 이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에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당첨 후 재당첨 제한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름)
•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정) 및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과밀억제권역 내) : 85㎡ 이하 주택 - 당첨일로부터 5년 / 85㎡ 초과 주택 - 당첨일로부터 3년
• 재당첨 제한기간(과밀억제권역 외) : 85㎡ 이하 주택 - 당첨일로부터 3년 / 85㎡ 초과 주택 - 당첨일로부터 1년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항 제1호 및 제2항 3호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계약자 인가일부터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당첨이 제한되며, 본 아파트의 당첨 또는 계약체결로 인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조합원분양신청 불가(현금청산 대상)할 수 있으니 이후 입주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
※ 청약과열지역 :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경기도 성남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화성시(동탄2택지개발지구)·과천시·광명시·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수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 전역 / 경기도 남양주시·하남시·고양시·수원시 팔달구·용인시 기흥구 - 공공택지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광명시·하남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 청약 제한사항(과거 당첨사실 등)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통해 미리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기 바람.
■ 분양권 전매 및 대출규제 안내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04호(2017.9.6)」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해당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함. 단 특별공급대상자는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향후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적용됩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및 정부정책에 따라 대출한도가 상이하여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시행위탁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중도금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2019.08.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2항에 의거 계약취소주택(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해지된 주택)은 20세대 또는 20호 이상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일 것 2.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 계약취소주택(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해지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4항에 따라 계약취소주택의 40%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2항에 따라 선정 합니다
■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각 사업주체들과 협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있는 계약취소주택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통합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2항에 따라 한꺼번에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취소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미만인 주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 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2018.5.28. 접수분 부터 적용)가 실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대구시 1년 이상 거주자)	일반공급 1순위 기타지역(대구1년미만/ 경북거주자)	일반공급 2순위 대구 / 경북거주자	당첨자발표	계약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정	2019.10.29.(화)	2019.10.30.(수)	2019.10.31.(목)	2019.11.01.(금)	2019.11.07.(목)	2019.11.18.(월) ~ 2019.11.20.(수)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t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장소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과-38336호(2019.10.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040-1 외 25필지 ■ 공급규모 : 지하6층, 지상 28층 2개동 아파트 총152세대[특별공급 61세대(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4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0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대지면적 및 연면적 : 대지면적 3,826.5750㎡ 건축물연면적 총 51,419.2694㎡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 ■ 주차대수 : 총 393 대 (공동주택 200대, 오피스텔 181대, 근생시설 12대)
■ 입주예정일 : 2023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계	일반분양세대수	저층우선배정세대수
민영주택	2019000950	01	084.0964A	84A	84.0964	29.3157	113.4121	55.1997	168.6118	12.5854	75	7	7	15	2	31	44	3
		02	084.1492B	84B	84.1492	30.2043	114.3535	55.2344	169.5879	12.5933	52	5	5	10	1	21	31	2
		03	084.0312C	84C	84.0312	30.5420	114.5732	55.1569	169.7302	12.5756	25	2	2	5	0	9	16	1
											152	14	14	30	3	61	91	6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비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함.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의 표기는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 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신청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타입)	라인	층별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분양가격	계약금 1차(10%) 계약시	계약금 2차(10%) 계약후 30일 이내	중도금 1차(10%) 2020.05.10	중도금 2차(10%) 2020.11.10	중도금 3차(10%) 2021.05.10	중도금 4차(10%) 2022.01.10	중도금 5차(10%) 2022.05.10	중도금 6차(10%) 2022.09.10	잔금(20%) 입주지정일
84A	102동 (1,2,3호)	3층	3	284,879,300	377,630,700	662,510,000	66,251,000	66,251,000	66,251,000	66,251,000	66,251,000	66,251,000	66,251,000	66,251,000	132,502,000
		4층	3	288,358,000	382,242,000	670,600,000	67,060,000	67,060,000	67,060,000	67,060,000	67,060,000	67,060,000	67,060,000	67,060,000	134,120,000
		5~10층	18	291,776,500	386,773,500	678,550,000	67,855,000	67,855,000	67,855,000	67,855,000	67,855,000	67,855,000	67,855,000	67,855,000	135,710,000
		11~20층	30	294,820,900	390,809,100	685,630,000	68,563,000	68,563,000	68,563,000	68,563,000	68,563,000	68,563,000	68,563,000	68,563,000	137,126,000
		21~27층	21	297,843,800	394,816,200	692,660,000	69,266,000	69,266,000	69,266,000	69,266,000	69,266,000	69,266,000	69,266,000	69,266,000	138,532,000
84B	101동 (1,2호)	2층	2	283,830,100	376,239,900	660,070,000	66,007,000	66,007,000	66,007,000	66,007,000	66,007,000	66,007,000	66,007,000	66,007,000	132,014,000
		3층	2	287,308,800	380,851,200	668,160,000	66,816,000	66,816,000	66,816,000	66,816,000	66,816,000	66,816,000	66,816,000	66,816,000	133,632,000
		4층	2	290,787,500	385,462,500	676,250,000	67,625,000	67,625,000	67,625,000	67,625,000	67,625,000	67,625,000	67,625,000	67,625,000	135,250,000
		5~10층	12	294,197,400	389,982,600	684,180,000	68,418,000	68,418,000	68,418,000	68,418,000	68,418,000	68,418,000	68,418,000	68,418,000	136,836,000
		11~20층	20	297,267,600	394,052,400	691,320,000	69,132,000	69,132,000	69,132,000	69,132,000	69,132,000	69,132,000	69,132,000	69,132,000	138,264,000
		21~27층	14	300,316,300	398,093,700	698,410,000	69,841,000	69,841,000	69,841,000	69,841,000	69,841,000	69,841,000	69,841,000	69,841,000	139,682,000
84C	102동 (4호)	3층	1	283,645,200	375,994,800	659,640,000	65,964,000	65,964,000	65,964,000	65,964,000	65,964,000	65,964,000	65,964,000	65,964,000	131,928,000
		4층	1	287,141,100	380,628,900	667,770,000	66,777,000	66,777,000	66,777,000	66,777,000	66,777,000	66,777,000	66,777,000	66,777,000	133,554,000
		5~10층	6	290,516,600	385,103,400	675,620,000	67,562,000	67,562,000	67,562,000	67,562,000	67,562,000	67,562,000	67,562,000	67,562,000	135,124,000
		11~20층	10	293,595,400	389,184,600	682,780,000	68,278,000	68,278,000	68,278,000	68,278,000	68,278,000	68,278,000	68,278,000	68,278,000	136,556,000
		21~27층	7	296,648,400	393,231,600	689,880,000	68,988,000	68,988,000	68,988,000	68,988,000	68,988,000	68,988,000	68,988,000	68,988,000	137,976,000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계약을 할 수 없음.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공급 가격을 총액범위 내에서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 일조권 등의 차이를 두어 적의 조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품목) 미포함 가격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 공급금액과 별도로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 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전기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 공용면적 일체는 공급하는 상기 금액에 포함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음.
• 시설별 대지지분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계약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오피스텔 및 상가, 근린생활시설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였으며, 각각의 처리에 따른 오차는 적정 조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세대 별 계약면적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사업 과정이나 실제 공부정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약간의 면적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산하지 않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였으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분양가에 계산되었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세금(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일로부터 입주자가 잔금을 납부한 시점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입주자가 부담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을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예정이며, 김리되지 건축공정 확인 사항은 입주자에게 유의하여 적용할 것임.
• 본 주택은 분양 중도금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미상 대출을 알선 받은 경우에도 중도금 무이자 대출 조건(중도금 대출의 이자를 사업주체가 부담)에 따라 대출이 될 수 있으며, 본 조건 외의 사항은 계약자가 부담함.
(중도금 대출은 은행의 알선은 시행위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업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 (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면책사항에 동의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을 원활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 시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입주 시에 납부하며 공제한 금액은 사용검사 후 납부함.
• 분양대금을 납부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하는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본 주택의 시행권 및 분양권자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봄.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임.
• 본 표시재료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84A	84B	84C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 유공자		1	1	1	3
	북한이탈주민		1	1	-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	2
	중소기업 근로자		2	1	-	3
	장애인		2	1	1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7	5	2	14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12	8	4	24
		일반공급(25%)	3	2	1	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	1	-	3
합 계			31	21	9	6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른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되어 현재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세대구성원 중 1인이라도 중복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므로 관리되며 (이 경우 특별공급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전용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14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구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의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 대구지방보훈청 의료대부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 중소기업 근로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추첨으로 입주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1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신청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작성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함(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인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이 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주택 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급신청자 배우자와의 동일세대를 포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이내) : 3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부모)도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순위 자격요건(투기과열지구)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 순위로 선정하며, 가점제 적용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름.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84호(2018.12.11.)]에 따름.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이내) : 3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8,646,943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9,597,500원	10,376,332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5,401,815원 ~ 6,482,177원	6,165,203원 ~ 7,398,242원	6,699,866원 ~ 8,039,838원	7,348,892원 ~ 8,818,669원	7,997,918원 ~ 9,597,500원	8,646,944원 ~ 10,376,33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30% 이하	6,482,178원 ~ 7,022,358원	7,398,243원 ~ 8,014,763원	8,039,839원 ~ 8,709,825원	8,818,670원 ~ 9,553,558원	9,597,501원 ~ 10,397,292원	10,376,333원 ~ 11,241,026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하여야 함.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중 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급의 동일 근로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 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세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계약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견본주택에 비치)	• 견본주택

■ 당첨자 선정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함.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경우에 한함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연속 1년 이상 거주(2018.10.24.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성년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입주자저축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 기재 등)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일반공급 2순위(기타지역)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 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하여 차순위 청약 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 포함)는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이내에 다른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의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됨(2순위로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및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세대에 속한 자의 경우 가점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향후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적용 제한자로 관리됨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을 변경하거나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충족하여야 청약 가능하며, 지역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기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주소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해당하는 청약예금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예치금액이 같거나 작은 지역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됨. 다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및 전입제한일이 있는 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됨(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예금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③ 청약예금 지역 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신청 가능 ④ 입주자저축 예치금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입주자저축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용면적 85 ㎡ 이하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 이하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 이하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 별 자격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거주구분	순위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1순위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100%) –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는 제외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되지 않은 자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의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 포함)는 2순위 청약불가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 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제외)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및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 우선 공급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 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등본 및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및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청 또는 군청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으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IV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19.10.29.(화) (APT2you : 08:00~17:30)	• 인터넷 청약 (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대구광역시 1년이상 거주자 (2018년 10월 24일 이전부터 계속거주)	2019.10.30.(수)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1순위 (기타지역)	대구광역시 1년미만 및 경상북도 거주자	2019.10.31.(목) 08:00~17:30		
	2순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	2019.11.01.(금) 08:00~17:30		

※ 1순위 청약일정 분리에 따른 청약유의사항
(1)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는 청약이 불가함(위반시 부적격 처리됨)
(2)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경상북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해당지역 접수일에는 청약이 불가함
(3)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함
※ 장기복무 중인 군인 청약 1순위 신청자중 대구광역시 1년 이상(모집공고일 기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 1순위 신청시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 기타 지역으로 신청 가능하오니 유의바람(위반시 부적격처리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자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계약 체결 전 제출)

구분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공통서류	0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무주택 입증 서류를 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 인터넷 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견본주택 비치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신청자 구비
	0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시 인감도장 생략	
	0		주민등록증	본인	•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0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t2you.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0		개인정보활용 일괄동의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	•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적격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견본주택 비치
	0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요망	신청자 구비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 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출(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다자녀 가구	0		다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본인		견본주택 비치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 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신청자 구비
		0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의 혼인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허위 임신 및 불법 낙태 방지를 위한 각서를 임신 제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견본주택 비치
신혼부부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 구비
		0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표시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0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성년인 직계존비속 소득입증서류)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0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허위 임신 및 불법 낙태 방지를 위한 각서를 임신 제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견본주택 비치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비사업자의 경우)	
노부모부양	0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견본주택 비치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 구비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 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 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0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0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 신청자 구비
	0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0		주민등록증	대리인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0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 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금융결제원소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 "주택청약 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상기 접수시간인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 (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 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창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이(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방법	• 층/동/호 구분없이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 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는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점제 당첨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 청약자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2순위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추첨에 의해 결정함. 단,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세대에 최하층 주택을 희망한 경우 최하층 우선 배정함.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정함),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 예비입주자 선정시 산정된 가점(추첨제 포함)이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선정시 제출한 청약자격 결과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가점점수 보다 높을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지 아니함.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된 경우 그 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arrington-mh3.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함.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 제출없이 청약 신청하며 당첨자 계약 체결 전 서면접수기간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의 일반공급 신청에 대해 무효 처리함.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이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추첨으로 입주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되며,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다 무효처리 됨.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되지 않음.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격여부를 확정함.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음.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경우 당첨 해지 시 계약금(위약금)이 원금만 환불됨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은 무효처리되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적용되며, 당첨 구비서류 미제출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결과는 개별통지하지 않음.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apt2you 및 시행위탁자 홈페이지)하며, 입주자 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 및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셔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 2019.11.07.(목)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19.11.18.(월) ~ 2019.11.20.(수) 3일간(10:00~16:00) • 해링턴 플레이스 만촌 견본주택(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2)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 접수를 통해 청약한 경우는 청약한 은행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본인에 한해 정보앙통을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정보앙통을 위해서는 본인에 대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청약은행명, 계좌번호,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반드시 본인의 신청인지 입력 착오로 인하여 정보가 확인이 가능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정보 확인하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하시 당첨사항 "정보앙통(아파트 당첨사항 조회)" 결과에 관계없이 '당첨내역 없음'으로 표기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APT2you를 통해 개별 조회하고 있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이 있으므로 응답하지 않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하며, 당첨자와 계약 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계약할 수 없음.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응답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후 계약 체결 기간 내에 연락처를 입력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연락처 변경 시 변경되지 않은 경우 공급을 받을 수 없음.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자와 동일하게 주택 소유 여부 및 당첨 사실 유무 등 확인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선정을 발표한 때부터 예비입주자 지위는 소멸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되어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됨).
• 예비입주자가 계약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 해제 세대에 대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harrington-mh3.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이용기간	2019.11.07.(목) ~ 2019.11.16.(토) (10일간)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ARS)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9-4-3)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 서비스	제공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19.11.07.(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 서비스는 2017.0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공통 기본서류 (특별공급 포함)	0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0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시 인감도장 생략
	0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0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 기간 확인이 불가할 경우(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출입국 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특별공급	0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본인	해당 특별공급 관련 서류 지참(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증명서류 포함하여, 방문신청을 한 자는 제외)
일반공급 추가서류 (1순위 당첨자)		0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비속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군 복무기간 (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본인	복무기간(10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통 (인터넷 청약접수시 제출생략)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대구, 경상북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0		계약자 인감증명서 (위임용) 및 인감도장	–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0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0		위임장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0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0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받아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여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외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기타 증명이 필요함.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은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현장수납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하며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주택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의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또는 당첨 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당첨자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이 제한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견본주택에서 계약 시 제출 서류 미비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음.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단,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라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당첨자 선정 시 재산정한 당첨자 점수 이상인 경우
■ 계약 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여부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계약 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자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803-768620	(주)하나자산신탁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이때 분양대금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502홍길동' / 102동 702호 계약자 → '1020702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시행위탁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 대출 안내
• 총 분양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축소되어 당사가 제시하는 조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련 규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한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으로 분양대금을 조달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대출승인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 불가능자 계약자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며, 적격대출 불가능자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을 지정 납부일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이 이뤄지지 않거나 계약자의 자격 미달로 중도금대출이 불가한 경우 중도금 납부일에 계약자는 본인 책임으로 중도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시행위탁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에 따라 계약자가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및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본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VI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금액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주택형(타입)	공급금액 (단위:원, V.A.T포함)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계약시	잔금(80%) 입주지정일
84A	29,900,000	2,990,000	2,990,000	23,920,000
84B	29,800,000	2,980,000	2,980,000	23,840,000
84C	29,900,000	2,990,000	2,990,000	23,920,000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괄 시공 예정이며 입주 이후에는 발코니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상세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일괄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
–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각종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세대는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내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벽체 등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결로발생시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 부위는 법규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는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처리,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불분명하게 되므로 시행위탁자는 적법한 관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하자보수 등을 요청 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위세대 평면도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음.
– 발코니 확장 시 관련 법령 상 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및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탈출형 대피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탈출형 대피시설과 난간대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1) 시스템 에어컨(공기청정기능 포함) + 전동빨래건조대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대수	설치위치	공급금액	제조사
84A	선택1	총 3개소	거실+주방+침실1(안방)	4,700,000	LG전자
	선택2	총 5개소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6,800,000	
84B	선택1	총 3개소	거실+주방+침실1(안방)	4,700,000	
	선택2	총 5개소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6,800,000	
84C	선택1	총 3개소	거실+주방+침실1(안방)	4,700,000	
	선택2	총 6개소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알파룸	7,800,000	

2) 가전제품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모델명	주택형	공급금액	제조사
빌트인냉장고	S711S124B	공통(84A, 84B, 84C)	6,600,000	LG전자
빌트인김치냉장고	K221PR14BL1	공통(84A, 84B, 84C)	1,900,000	LG전자

3) 기타품목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공급금액 84A	84B	84C	비고
가구	주방	주방 상판 및 벽체(엔지니어드스톤) + 하이브리드쿡탑	3,600,000	3,600,000	2,900,000	
		식탁	2,000,000	2,000,000	1,600,000	
	침실1 (안방)	슬라이딩장	5,600,000		5,600,000	
		붙박이장		4,500,000		
	복도	시스템선반+가구도어+검사벽	알파룸 2,500,000	3,000,000	2,600,000	
			팬트리		1,800,000	

• 추가 선택 품목 유의 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품목별 계약금이 상이하며,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사업주체(시행위탁자) 시공사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고, 제품사양은 견본주택 및 CG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등)은 견본주택 방문시 안내 받으시기 바람.
– 본 입주자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의 주택공급 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추가 선택품목 가격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이며 견본주택에서 일부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의 실제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할 수 없음(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 중 설치 위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등의 조정가능이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제품 제조사의 모델 및 품목 등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항목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선택품목은 실내기 수량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배관 등이 설치되며 방향에 따라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신청 세대는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은 매립으로 설치되나 실외기 위치, 스탠드형,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 위치 등이 다를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 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견본주택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로 계약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 및 설계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유상옵션	우리은행	1005-803-824361	(주)하나자산신탁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예 : 101동 801호 홍길동의 경우 "101801홍길동"이라고 기재]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신용카드 결제 불가)

VII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통사항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입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 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제로 분양 위해 설계는 건전으로 그 이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쟁행 발생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없이 예정된 공정을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는 사업기간 중 입주자 건설전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적합한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한 경우 유용성이 있는 경우 교육청이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부적합하다고 주장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아파트 분양 전단지, 광고물 등에 게시된 사항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음.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 등은 관계기관 심의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은 주택법상 대규모 공동주택이 아닌 관계로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가스 배관, 수도관 등은 노출될 수 있음.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시는 납부 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을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공급대상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규모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관련
• 견본주택 내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 내 욕실유로,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다르다. 변경 등을 불포함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담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 견본주택 및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시설물은 비내력 시설물 또는 확장 세대기준 등으로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모형 VR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와 위치 및 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에 노출되어 설치된 전시조명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커튼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았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 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 건축허가도서에 (변경허가 및 신고 포함)에 준함.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선동장치 등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세대별 평면 및 마감사항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유상옵션의 시스템(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전기 용량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식물은, 드라이에어리어(DA), 상가 설치기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됨.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홍보물 관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 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은 모형도(단지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면 및 외관 등은 인허가 과정 및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그 밖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카탈로그 등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도시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하시기 바람.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카탈로그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람.
■ 단지 외부여건
• 계약예정자는 개발 계획, 건축허가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 재해교육 등)의 협의 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자장·학교보건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항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 여건과 관련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지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주변 교육시설 등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통학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변 교통 여건은 관계 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VIII 기타 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 예정자 및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
■ 입주예정일 : 2023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당사 내부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함.
■ 부대복리시설 : 통합관리실, 주민커뮤니티시설(키즈 & 북카페, 피트니스)
■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92019-104-0005600 호	83,351,472,000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전세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택분양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약관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계좌를 말합니다)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회사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금 납부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입주금을 보증사고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자가 해지된 경우,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금 납부기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3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가전 등) 등과 관련한 입주금.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분양받은 주택 및 복리시설의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자금을 빌려주어 분양받은 주택 및 복리시설의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를 넘어선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약관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 (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예정공정률이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 시 최초 예정공정률을 말함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시행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1회 이상 알립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지하주차장의 지하층 층고 : 지하1층 5.0m, 지하2층 3.6m, 지하3~5층 3.4m, 지하6층 3.6m
• 지하층 차로 통로의 유효 높이 : 2.5m
• 지하2~6층 차로 통로의 유효 높이 : 2.3m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토목/기계	전기	소방/정보통신
회사명	㈜해안건축	(주)신덕엔지니어링	(주)신덕엔지니어링
감리금액	₩990,000,000	₩198,000,000	₩286,000,000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관리형 토지신탁
• 본 분양은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시행되며, 시행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은 시행위탁자 「(주)에스엠코퍼레이션」, 시공사 「효성중공업(주)/진흥기업(주)」 간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에 의하여 시행수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며, 시행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그 외의 제반 책임은 시행위탁자가 부담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매수인은 수분양자로서 시행위탁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는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합니다.
• 수분양자는 본 분양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행위탁자"의 "시행수탁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수분양자"에게 본 분양계약의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시행수탁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계약서상 기재된 범위 내에서 포괄 승계되며 "시행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매도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변경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시행수탁자는 분양공급대금으로서의 일체 의무(공급계약 해제/해지시 분양대금 반환의무, 소유권이전관련 업무, 입주지연 지체상금, 하자보수책임 등)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동 의무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시행위탁자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하여 함.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분양대행사
상호	(주)하나자산신탁	(주)에스엠코퍼레이션	효성중공업㈜	진흥기업㈜	㈜국진하우징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96안길 4(만촌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송도동, 송도월페니엄 807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 203호 (금곡동, 분당하우스토리)
법인 등록번호	110111-1714818	170111-0656241	110111-6770154	110111-0006349	131111-0272987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자 :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시 개별등기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 080007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2019-건축과-신축허가 151)

■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2
■ 사업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040-1 외 25필지
■ 홈페이지 : http://www.harrington-mh3.com
■ 분양문의 : 053-743-8008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람.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며(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Harrington Place